

# 서울특별시 시립서울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2148번
- 발 의 자 : 서울특별시장
- 발 의 일 : 2017년 10월 16일
- 회 부 일 : 2017년 10월 24일

## 2. 제안이유

- 가. 시립서울유스호스텔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로서, 우리 시가 사단법인 흥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나 2017년 말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 나.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재계약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를 실시한 결과, 1차(청소년정책과 적격자심의위원회), 2차(조직담당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모두 적정으로 결정되었으며,
- 다. 여행청소년의 숙식편의와 활동을 지원하는 유스호스텔은 쾌적한 숙식환경 제공, 학교와의 네트워크 구축·협력 및 양질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로,

현 수탁법인이 청소년활동의 전문성과 역사성,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여 안정적·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였기에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및 부칙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시립서울유스호스텔 관리·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 내용)제1호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유스호스텔은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여행청소년의 숙식편의와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수련시설로서,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요구에의 적절한 대응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와 함께 이용료 수입을 통한 운영이라는 면에서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므로 능률성 또한 현저히 요구됨.

- 이에 청소년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다양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으며, 청소년 관련 전문적 지식과 사업경험이 풍부한 현재 위탁법인(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 위탁사무 내용

- 국내외 청소년을 위한 숙박시설 관리·운영
- 국내외 청소년을 위한 교류 및 홍보
- 국내외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 그 밖에 유스호스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퇴계로 26가길 6(예장동)
- 개관일자 : 2006. 2. 23.
- 시설규모 : 연면적 6,483m<sup>2</sup>(지상 7층, 지하 1층)
- 지원시설 : 객실 50개, 강당 1개, 회의실 4개, 식당 1개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 2년 (2018.1.1 ~ 2019.12.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314백만원('17년)

- 산출근거

- 인건비 933백만원, 물건비 1,232백만원, 경상이전 177백만원, 자본지출 312백만원, 사업비 76백만원, 사업외지출 529, 예비비 55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2017년 제6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 재계약타당성 등 적정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5.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상위법<sup>1)</sup>에 따라 설치·운영되어 여행청소년의 숙식편의와 활동을 지원하는 시립서울유스호스텔의 민간위탁기간 만료예정일이 도래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사)흥사단과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sup>2)</sup>)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 서울유스호스텔 민간위탁의 개요 >

-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퇴계로 26가길 6(예장동)
  - 개관일자 : 2006. 2. 23.
  - 시설규모 : 연면적 6,483m<sup>2</sup> (지상 7층, 지하 1층, 부지면적 17,223m<sup>2</sup>)
  - 지원시설 : 객실 50개(수용인원 312명), 강당 1개, 회의실 4개, 식당 1개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민간위탁기간 : 2년 (2018. 1. 1 ~ 2019.12.31)
- 위탁사무 내용 : 국내외 청소년을 위한 숙박시설 관리·운영, 국내외 청소년을 위한 교류 및 홍보, 국내외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그 밖에 유스호스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3,314백만원(2017년)
  - 산출근거 : 인건비 933백만원, 물건비 1,232백만원, 경상이전 177백만원, 자본지출 312백만원, 사업비 76백만원, 사업외지출 529, 예비비 55백만원

1)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시립서울유스호스텔 민간위탁 추진 현황 >**

- 2006. 2. 26. : 1차 위탁협약 체결 (사)삼동청소년회(신규 공개모집)
- 2009. 2. 19. : 2차 위탁협약 체결 (사)삼동청소년회(재계약)
- 2011. 2. 19. : 3차 위탁협약 체결 (사)삼동청소년회(재위탁 공개모집)
- 2014. 4. 1. : 4차 위탁협약 체결 (사)삼동청소년회(재위탁 공개모집)
- 2015. 3. 1. : 5차 위탁협약 체결 (사)홍사단(재위탁 공개모집)

○ 평생교육국은 시립서울유스호스텔이 청소년의 숙식제공과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료 수입을 통한 운영에 있어서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 (사)홍사단 현황 >**

○ 재계약 대상 : (사)홍사단

- (사)홍사단은 1963년에 홍사단 아카데미를 창립
- 청소년활동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고 무실, 역행, 충의, 용감의 정신으로 국민의 자질향상과 인재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 자산보유현황 : 27,357,438천원
- 인력현황 (단위 : 명)

구분	합계	임원	직원	운영시설	회원수	비고
인원수	25,261	10	20	231	25,000	

○ 시립서울유스호스텔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숙박시설 제공, 국내·외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으며,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생활지도 및 보호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전문성은 요구된다고 하겠음.

-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은 청소년이용률을 최소 60%이상이 되도록 하며, 80%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립서울유스호스텔은 2017년 69.2%로, 청소년이용률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2017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 >

2) 청소년이용률 관리 및 보고

-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이용률을 전체 이용자 대비 최소 60% 기준으로 80%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여야 함

< 시립서울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률 >

(2017.7.31.기준)

구 분	사 업 실 적					
	2015년	구성비	2016년	구성비	2017년	구성비
총계	218,978명	100%	224,652명	100%	122,324명	100%
유아	0명	0%	46명	0%	0명	0%
청소년	143,476명	65.6%	149,008명	66.3%	84,768명	69.2%
성인	75,502명	34.4%	75,598명	33.7%	37,556명	30.8%

※ 시립서울유스호스텔의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2017년 4월~6월, (주)한국정보경영평가)를 보면, 89.4점을 보이고 있으며, 주변환경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개발, 진로체험 프로그램, 친환경유통센터와 약정으로 친환경 식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음.

< 서울유스호스텔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요약 >

사업인프라 (25)	사업활동 (10)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노력(15)	사용자만족도 (20)	사업성과 (30)	합계 (100)
21.6	8.4	15.0	17.4	27.0	89.4



- 평생교육국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2018년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였고,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서에 보면,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생략되고, 보고로만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는 “예산 사전절차 이행 원칙”에 위배됨과 아울러 재계약시 동의안을 의결받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sup>3)</sup>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안 제출이 지연된 사유에 대한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시립서울유스호스텔 민간위탁 추진경위 및 계획 >

- 2017년 4~7월	위탁운영기간 사업실적 종합성과평가 실시
- 2017년 8. 7.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 2017년 8. 23.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2017. 9월말
- 시의회보고	: 2017. 11월
- 재계약 위탁운영 협약체결	: 2017. 12월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정찬일

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